

25. 대학원 공동지도교수제도 내규

제정 : 2007. 2. 20.

개정 : 2014. 2. 25.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공동지도교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공동지도교수란 학생의 연구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와 그 분야의 동일 학과 및 타 계열 학과 교수, 협정대학의 교수와의 공동지도가 필요한 경우,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지도교수로 승인하는 것을 뜻한다.

제2조의2(선정 및 자격)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
1. 학제적 성격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
 2.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 협정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
 3. 그 밖에 각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경우
- ②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우리 대학교 또는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교원으로 한다.

제3조(신청 및 허가) ① 공동지도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지도교수, 공동지도교수,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거쳐 공동지도교수 신청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공동지도교수제도 신청은 학위과정 1학기가 끝난 후에 할 수 있다.

③ 대학원장은 공동지도교수 신청서에 기재된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지도교수로 승인할 수 있다. 단, 논문지도비는 책임지도교수에게만 지급한다.

제4조(이수학점) ① 공동지도교수제를 허가 받은 학생은 소속 학과 학위수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② 공동지도교수제를 선택한 학생은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점의 2/3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

제5조(논문심사) ①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한다.

②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. 단,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경우 논문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. 단,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규정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 본 내규는 2007년 3월부터 적용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개정내규(제2조, 제2조의2 신설, 제5조)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